

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 실시가능직종 신청 관련 안내

'22.5.2.~5.11. 18:00까지 실시하는 「2022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」의 훈련과정 심사(2023년 운영 훈련과정)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훈련기관이 실시할 수 있는 NCS 직종(소분류 기준)을 사전에 승인받아야 합니다.

이에 실시가능직종 신청 기한을 4.27.(수) 18:00까지 연장하니, 미승인 직종의 신청이 필요한 훈련기관에서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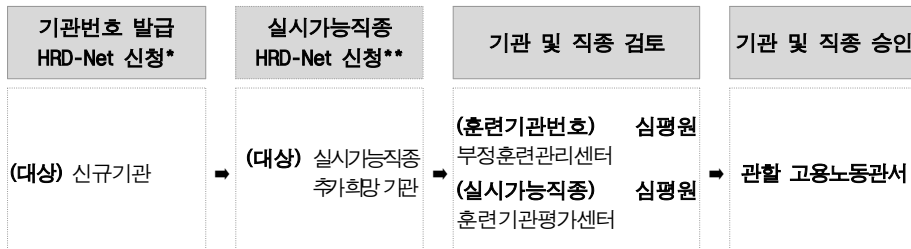
1. 신청기간, 방법 및 승인절차

□ 실시가능직종 신청 기간: 2022.1.10.(월) ~ 4.27.(수) 18:00까지

※ 당초 4.22.(금) 18:00까지로 안내된 신청 기간을 4.27. 18:00로 연장

※ 실시가능직종 승인까지 최대 7일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「2022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」에서 훈련과정 심사(2023년 운영 훈련과정)를 신청하고자 하는 기관은 반드시 해당 기간 안에 실시가능직종 신청을 완료해야 함

< 훈련기관 및 직종 등록승인 절차 >



* 훈련기관번호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훈련기관번호 발급 신청 불필요

** 실시가능직종을 기 승인받은 훈련기관이나 원격훈련기관은 실시가능직종 신청 불필요

□ 신청방법: HRD-Net 심사평가시스템으로 신청(붙임2 참조)

※ 5MB 이내로 첨부하여야 하며, 파일이 2개 이상일 경우 zip파일 형태로 첨부

2. 유의사항

○ 실시가능직종으로 승인되지 않은 직종은 「2022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」의 과정심사(2023년 운영 훈련과정) 신청 불가

※ 2023년 운영 계획이 있는 훈련과정의 직종 승인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미승인된 직종이 있는 경우 2022.4.27.(수) 18:00까지 모두 신청해야 함

- 2022.4.27.(수) 18:00까지 접수된 실시가능직종 신청 건에 대하여 「2022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심사평가」 신청 시작일(2022.5.2.) 전까지 직종 승인을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

○ 신규기관이 훈련기관번호 신청 후 검토 단계를 거쳐 발급 완료까지 평균 3일 가량 소요되며, 반려·불승인될 경우 재신청 및 재검토 기간이 별도 소요되므로, 이를 고려하여 2022.4.22.(금) 18:00까지 '훈련기관번호' 발급 신청을 완료해야 함

○ 훈련기관 유형이 변경*된 기관은 보유한 실시가능직종이 모두 승인취소 되므로, 반드시 유형 변경일 기준 15일 내 변경신청을 이용하거나 정기신청기간을 통해 승인 신청하여야 함

* (예) 지정직업훈련시설 → 학원, 학원 → 평생교육시설 등

○ 현장조사는 실습장 활용이 많은 직종 등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(지방고용노동관서 및 심평원 수행)

○ 승인받은 실시가능직종은 별도의 유효기간 없이 승인 상태가 유지되나, 삭제 및 승인 취소된 직종은 재신청하여야 함

※ HRD-Net(심사평가시스템)에서 직종처리상태 및 승인여부 반드시 확인 필요

○ 실시가능직종 신청 시 허위로 증빙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승인취소 할 수 있음

○ 훈련기관에서는 학과(전공), 지정직업 훈련시설 지정서에 명시된 직종, 교육과정 편성표의 과목명, 교습비 게시표의 교습과목 등이 폐강 및 변경되어 승인된 실시가능직종과 부합되지 않을 경우, 반드시 자체적으로 해당 직종은 삭제해야 하며, 향후 발견될 시 심사 및 평가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
※ [HRD-Net심사평가시스템 ▶ 인증평가 ▶ 실시가능직종신청목록 ▶ 삭제]

3. 문의처

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훈련기관인증평가센터	
실시가능직종	(온라인) www.ksqa.or.kr > 소통마당 > Q&A > 훈련기관평가 (유선) 1644-5113(내선 1번), 02-6943-4010
훈련기관번호	(온라인) www.ksqa.or.kr > 소통마당 > Q&A > 부정훈련관리센터 (유선) 1644-5113(내선 5번), 02-6943-4085

붙임1

훈련기관 유형별 실시가능직종 증빙 자료 및 검토사항

훈련기관 유형	제출 증빙자료	검토사항
지정직업 훈련시설	· 지정직업훈련시설지정서 * 향후 HRD-Net 지정신청(변경지정) 시 승인 받은 훈련직종(NCS직종) 자동연동 예정이며, 자동연동 시 별도 신청 불필요(22년 전산개편 예정)	· 지정서에 명시된 직종과 신청한 훈련직종의 부합성
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	· 해당 학교 학칙	·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설치된 학과(전공)와 신청한 훈련직종의 부합성
평생 교육 시설	일반 ·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· 교육과정 편성표(교육지원청 직인 포함) * 참고: 교육과정 편성표 내 교육지원청 직인이 없으면, 교육과정편성 수리 공문(교육지원청) 추가 첨부 학교 부설 ·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 설치보고 공문(교육부) 등 · 교육과정 편성표 및 교육과정 신고 공문 등(교육부 공문, 학점은행 종합정보시스템 '기관정보관리-학습과정' 캡처화면 등)	· 교육과정 편성표의 과목명과 신청한 훈련직종의 부합성
학원 (평생직업 교육학원)	· 학원설립·운영등록증 · 교육부(www.neis.go.kr)에서 발급한 교습비 등 게시표 * 참고: 학원에서 자체 발행한 교습비 등 게시표 불가	· 교습비 등 게시표의 교습과목과 신청한 훈련직종의 부합성
타법령에 따른 직업훈련시설 (기관)	· 훈련기관 지정서 또는 교육훈련 법적근거 및 기관 정관	· 지정서 또는 법령 상에 명시된 훈련분야와 신청한 훈련직종의 부합성
사업주 사업주단체 등의 시설	· 정관 · 소속 회원사 명단	· 사업주단체 및 교육적 목적과 신청한 훈련직종의 부합성

1 HRD-Net 심사평가시스템 접속

참고 HRD-Net 심사평가시스템 설치 경로

- ① HRD-Net 홈페이지(www.hrd.go.kr) 로그인 → 마이 서비스 → 행정지원 이용신청 → 승인 → 행정지원시스템 다운로드(심사평가시스템 동시 다운로드)
 - ② 설치URL : https://www.hrd.go.kr:44381 (이용방법안내 참고)
- ※ HRD-Net 심사평가시스템 관련 오류는 한국고용정보원(1577-7114)으로 문의



- ① [HRD-Net 심사평가] 접속
- ② 공인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

2 실시가능직종 신청



- ① ~ ② 인증평가 ▶ 실시가능직종 ▶ 실시가능직종 신청목록
- ③ 승인신청 (기존에 승인받은 직종은 승인신청 불필요)



- ④ ~ ⑦ 승인신청 직종(NCS대분류·중분류·소분류) 선택, 중복확인, 첨부파일 첨부하여 승인신청
- ※ 처리 결과 수신 연락처 입력 및 알림 수신 동의 시 알림 제공(카카오톡, SMS)

3 실시가능직종 처리상태 확인



- ① 신청완료·승인·반려 등 처리상태 확인 가능
- ② '승인취소' 상태인 직종은 신규 승인신청 필요
- ※ '접수' 처리 상태에서 2~3일 소요 시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

4 실시가능직종 보완신청



- ① 반려된 신청 건 'NCS 분류' 클릭
- ② ~ ③ 첨부파일 첨부하여 보완신청

※ 신청한 실시가능직종의 처리상태를 확인하고, 반려된 경우 필히 반려 의견 확인 후 기간 내 보완신청 요망